회사와 직원이 만드는 하모니

# 직무발명제도

KIPA
한국발명진흥회

특허청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본 저작물은 특허청, 한국발명진흥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한국발명진흥회 ip-job.org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KIPA 한국발명진흥회

# 01
# 직무발명이란?

<특허법 제33조 (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)>

① **발명을 한 사람** 또는 **그 승계인**은
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**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**를 가진다.

# 01
# 직무발명이란?

"직무발명"이란

**종업원, 법인의 임원** 또는 공무원이

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
**성질상 사용자·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**

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
**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**을 말한다.

**< 발명진흥법 제2조 >**

# 01 직무발명이란?

이것을 **직무발명제도** 라고 합니다

**< 발명진흥법 제15조(직무발명에 대한 보상) >**

① 종업원등은 **직무발명**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**계약이나 근무규정**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**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**를 가진다.

01

# 직무발명제도란?

## 직무발명제도 규정이나 계약이 없는 경우

**Q1** 종업원 명의로 특허 출원하면 회사에 대한 배임죄?

»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음!

: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발명을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하여도 자신의 권리 행사로 인정

BUT!

##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있는 경우

**Q** 직무발명제도가 있는 경우 종업원 명의로 특허 출원하면 회사에 대한 배임죄?

» 배임죄에 해당!

: 직무발명제도에 의거하여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, 이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배임죄를 구성한다.

# 01 직무발명제도란?

## 직무발명제도를 보유한 기업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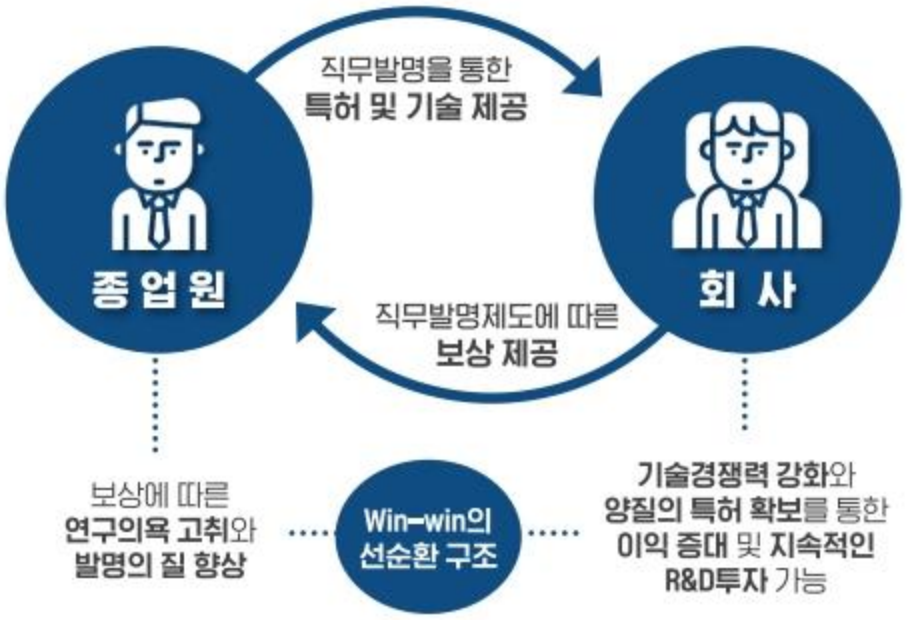


## 직무발명제도가 없는 기업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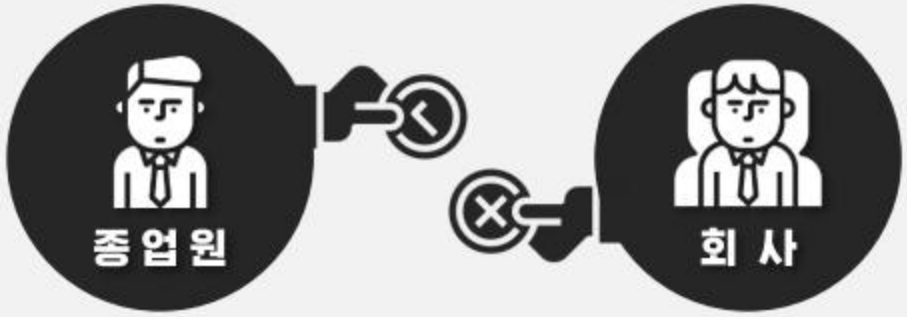


종업원의 특허 출원 BUT, 회사의 승계 권리 X

퇴직 이후 사업화에 활용 BUT, 회사의 막을 권리 X

∵ **직무발명제도**가 없었기 때문에, **회사**에 **승계 권리** 또한 **없음!**

01

# 직무발명제도의 효과

02

#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근거 법령

< 발명진흥법 제15조 (직무발명에 대한 보상) 2항 >
<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 (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의 범위 등)

## 보상규정 문서화 및 공시

**보상형태,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, 지급방법**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**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.**

## 보상규정 변경 시 협의 필수

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**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들과 협의**하여야 하며, **보상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**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**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**합니다.

* 협의나 동의 모두 종업원 과반수 이상 필요

## 보상규정 변경 15일 전 공지

**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** 보상규정의 적용을 **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** 등에 관하여 **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합니다.**

02

#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< 발명진흥법 제17조 (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) >

01 직무발명제도 도입 결정

02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
사용자(기업) 측 대표, 특허전담부서 담당자, 종업원 측 대표 등

직무발명제도 규정 협의 및 보상액 결정

03 종업원 등에게 규정(안) 제시 및 의견 청취

04 이의 없음

04 이의 있을 경우 재협의

재협의

수정된 규정(안)

05 책정된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제도 도입 완료

02

#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<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 (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) >

## 사용자 위원

사용자
or
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
or
법인의 대표자가
위촉하는 사람

## 직무발명 심의위원회

각 위원의 수는 **각각 3명 이상**이되,
상시근무하는 **종업원의 수가**
**30명 미만인 경우**에는 **각각 1명 이상**

## 종업원 위원

종업원등이
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
선출한 사람

02

#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

01 직무발명제도 도입 결정

02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
사용자(기업) 측 대표, 특허전담부서 담당자, 종업원 측 대표 등
직무발명제도 규정 협의 및 보상액 결정

03 종업원 등에게 규정(안) 제시 및 의견 청취

04 이의 없음

04 이의 있을 경우 재협의

재협의

수정된 규정(안)

05 책정된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제도 도입 완료

## ① 제도 도입 결정(공표) + 종업원 위원 추천 및 접수 공고(종업원 위원회 구성 절차)

수 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종업원 위원 추천 및 접수공고

직무발명 주식회사는 발명진흥법 제2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. 직무발명제도 규정 및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, 종업원 위원(3인 이상) 추천 및 후보자 접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접수기간 : 2018.12.3.(월) ~ 2018.12.7.(금)
나. 투표일자 : 2018.12.14.(금) 14:00
다. 투표장소 : 직무발명 주식회사 대회의실

첨 부 :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종업원 위원 추천서 1부. 끝.

02

#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

01 직무발명제도 도입 결정

02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
사용자(기업) 측 대표, 특허전담부서 담당자, 종업원 측 대표 등
**직무발명제도 규정 협의 및 보상액 결정**

03 종업원 등에게 규정(안) 제시 및 의견 청취

04 이의 없음

04 이의 있을 경우 재협의

재협의

수정된 규정(안)

05 책정된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제도 도입 완료

## ② 사용자위원 위촉, 종업원 접수 결과 및 투표 공지

수 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사용자 및 종업원 위원 접수결과 공고

직무발명 주식회사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을 위한 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위촉 및 종업원 위원 접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사용자 위원 위촉결과

| 구 분 | 성 명 |
|---|---|
| 1 | 김직무 |
| 2 | 이직무 |
| 3 | 박직무 |

나. 종업원 위원 접수결과

| 구 분 | 성 명 |
|---|---|
| 1 | 장발명 |
| 2 | 조발명 |
| 3 | 서발명 |
| 4 | 유발명 |

다. 종업원 위원 투표일정 : 2018.12.14.(금) 14:00 대회의실. 끝.

02

#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

01 직무발명제도 도입 결정

02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
사용자(기업) 측 대표, 특허전담부서 담당자, 종업원 측 대표 등
**직무발명제도 규정 협의 및 보상액 결정**

03 종업원 등에게 규정(안) 제시 및 의견 청취

04 이의 없음

04 이의 있을 경우 재협의

재협의

수정된 규정(안)

05 책정된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제도 도입 완료

## ③ 종업원위원 선정 결과 및 회의 개최 통지

수 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종업원 위원 선정결과 및 회의 개최 안내

1. 직무발명 주식회사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을 위한 종업원 위원 투표결과 장발명, 조발명, 서발명(이상 3명)이 선출되어 종업원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2. 직무발명제도 규정 및 보상규정 협의를 위한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회의가 2018년 12월 17일(월) 14:00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, 사용자 위원 및 종업원 위원의 참석 바랍니다. 끝.

02

#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

**01** 직무발명제도 도입 결정

**02**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
사용자(기업) 측 대표, 특허전담부서 담당자, 종업원 측 대표 등
직무발명제도 규정 협의 및 보상액 결정

**03** 종업원 등에게 규정(안) 제시 및 의견 청취

재협의

**04** 이의 없음

**04** 이의 있을 경우 재협의

수정된 규정(안)

**05** 책정된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제도 도입 완료

## ④ 제도 도입을 위한 회의 결과 및 협의(15일) 공표

수 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회의결과 및 의견 제출 공고

직무발명 주식회사의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회의결과, 첨부와 같이 회사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금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제도 규정(안)을 도출하였으니, 검토 후 2018.12.31.(월)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출 의견을 위원회에서 검토·논의 후 최종 규정을 배포할 예정입니다.

첨 부 : 1. 직무발명 주식회사 직무발명제도 규정(안) 1부.
2. 직무발명제도 규정(안) 의견 제출서 1부. 끝.

| 직무발명제도 규정 의견서 |
| --- |
| 성명 : |
| 소속 : |
| 직위 : |
| 의견 : |
| 20 년 월 일<br>성명 (서명) |

02

#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

01 직무발명제도 도입 결정

02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
사용자(기업) 측 대표, 특허전담부서 담당자, 종업원 측 대표 등
직무발명제도 규정 협의 및 보상액 결정

03 종업원 등에게 규정(안) 제시 및 의견 청취

04 이의 없음

04 이의 있을 경우 재협의

재협의

수정된 규정(안)

05 책정된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제도 도입 완료

## ⑤ 직무발명제도 규정 제정 및 시행 공고

수 신 내부결재
(경유)
제 목 직무발명제도 규정 제정 및 시행 공고

직무발명 주식회사의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통해 첨부와 같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제정하였으며, 2019년 1월 1일(화) 09:00부로 시행하겠습니다.

첨 부 : 직무발명 주식회사 직무발명제도 규정 1부. 끝.

# 03 직무발명 승계 절차 관련

< 발명진흥법 제12조 (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) >
< 발명진흥법 제13조 (승계 여부의 통지)
<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(승계 여부의 통지기간)

## 직무발명 완성 시 즉시 통지

**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**에는 **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.** 2명 이상의 종업원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**공동**으로 알려야 합니다.

## 통지 후 권리 승계 여부 안내

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(4개월)**에 **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** 알려야 한다. 다만, **관련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.**

## 기간 내 미안내 시 자동 포기

**정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**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**발명을 한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.**

03

# 직무발명 승계 절차

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의 완성

**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**
(직무발명 완성 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)

**사용자(기업) 등의 승계여부 통지**
(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문서로 통지)

**기간 내의 통지**

- **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**
  사용자(기업) 등 :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(승계의사를 알린 때 승계된 것으로 간주)
  종업원 등 :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, 비밀유지 의무 부담(출원유보 시에도 보상)
- **불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**
  사용자(기업) 등 : 통상실시권 취득
  종업원 등 :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

**기간 외의 통지 및 미통지**

사용자(기업) 등 : 통상실시권 취득
종업원 등 :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

**① 발명신고서** – 종업원이 담당자에게 제출(발명진흥법 12조)

| 접수번호 | 000-0001 |
|---|---|
| 접수일자 | 2019. 2. 1 |
| 접 수 자 | 직위 : 주임<br>성명 : 김종무 (인) |

**발 명 신 고 서**

| 발명의 명칭 (가제) | 한글: 직무발명을 위한 직무발명<br>영문: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성 명 | 지분(%) | 소속 부서 | 전화번호 |
| 발 명 자 | 한글: 홍 길 동 (인)<br>영문: | 100% | 연구개발부서 | 1234-5678 |
| | 한글: (인)<br>영문: | | | |
| | 한글: (인)<br>영문: | | | |
| | 한글: (인)<br>영문: | | | |

직무발명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
위 발명의 완성 사실을 신고합니다.

2019년 2월 1일

신고(발명자 대표)자 : 홍길동 (인)

직무발명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귀중

첨부: [별지2호] 발명설명서

03

# 직무발명 승계 절차

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의 완성

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
(직무발명 완성 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)

사용자(기업) 등의 승계여부 통지
(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문서로 통지)

기간 내의 통지

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
사용자(기업) 등 :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(승계의사를 알린 때 승계된 것으로 간주)
종업원 등 :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, 비밀유지 의무 부담(출원유보 시에도 보상)

불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
사용자(기업) 등 : 통상실시권 취득
종업원 등 :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

기간 외의 통지 및 미통지

사용자(기업) 등 : 통상실시권 취득
종업원 등 :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

## ② 담당자가 종업원에게 승계여부 결정 통지(발명진흥법 13조)
## -4개월 이내 승계 통지시 양도증 함께 작성

[별지 제3호 서식]

| 수령일자 | 2019. 2. 28 |
|---|---|
| 수 령 자 | 직위 : 사원<br>성명 : 홍길동 (인) |

**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**

| | |
|---|---|
| 접수 번호 | 000-0001 |
| 수신(성명자) | 홍 길 동 |
| 발명의 명칭 | 직무발명을 위한 직무발명 |

직무발명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승계 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**결 정 사 항**

| | |
|---|---|
| 1. 직무발명 여부 | 홍길동 사원의 발명은 직무발명임 |
| 2. 회사의 승계 여부 | 발명의 결과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되므로, 승계 희망함 |
| 3. 기타 | |

2019년 2월 28일

직무발명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(인)

[별지 제4호 서식]

| 접수번호 | 000-0001 |
|---|---|
| 수령일자 | 2019. 2. 28 |
| 수 령 자 | 직위 : 사원<br>성명 : 홍길동 (인) |

**양 도 증**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발명의 명칭 (가제) | 한글: 직무발명을 위한 직무발명<br>영문: | | | | 지분율 (%) |
| 양 도 인 | 성 명 | 홍길동 (인) | 생년월일/사번 | 1990. 1. 1 / 12-5 | 100% |
| | 주 소 |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| | | |
| 양 수 인 | 성 명 | 직무발명 주식회사 | 대표이사 | 김발명 | |
| | 주 소 |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| | | |

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무발명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 주식회사에 양도합니다.

2019년 2월 28일

직무발명 주식회사 (인)

03

# 직무발명 승계 절차

## ③ 출원 통지서 - 사용자가 직무발명 승계 후 특허 출원 시

[별지 제5호 서식]

**출원 통지서**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문서번호 | 000-0001 | | |
| 수 신 | 연구개발부서 | | |
| 발명의 명칭 | 직무발명을 위한 직무발명 | | |
| 발 명 자 | 홍길동 | | |
| 직무발명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8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출원 여부 등을 통지합니다. | | | |
| 권리 내용 | | | |
| 출원 여부 | 국내 출원 | | |
| 출원 일자 | 2019. 4. 1 | 출원 번호 | 000-0001 |
| 미출원 이유 | | | |
| 2019년 4월 1일<br>직무발명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(인) | | | |
| 첨부 : 출원 명세서 | | | |

출원사실증명원

CERTIFICATE OF APPLICATION

## ④ 보상금 지급 품의서(출원 보상금 지급시)

수 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보상금 지급건

당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0조에 따라 홍길동 사원(사번 2012-5)의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(출원번호 : 000-0001) 건에 대하여 출원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.

- 아 래 -

가. 일 시 : 2019. 4. 1(월)
나. 지급대상 : 홍길동 사원(사번 2012-5)
다. 금 액 : 일금 오만원정 (₩ 50,000)
라. 지 급 처 : 직무발명 주식회사 지출계좌
마. 지급방법 : 발명자에게 직접 계좌이체

첨 부 : 출원사실증명원(출원번호 000-0001). 끝.

# 04 직무발명제도 보상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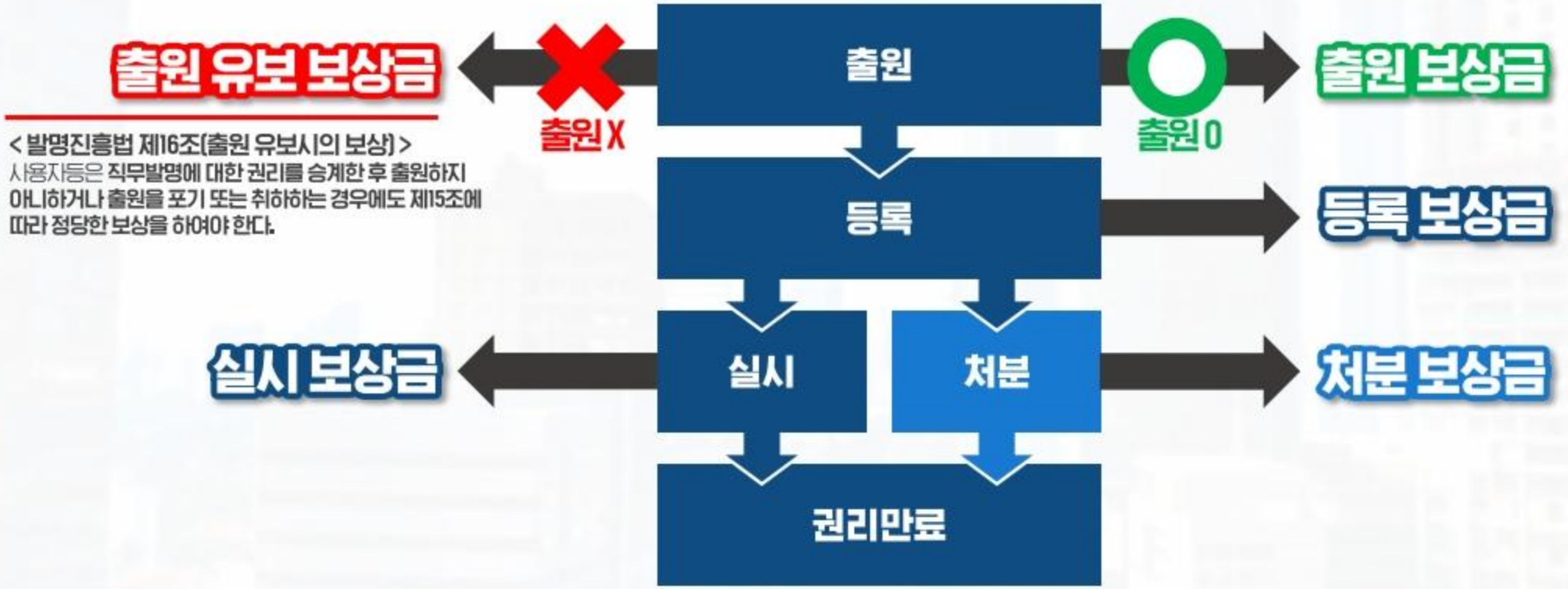


<발명진흥법 제16조(출원 유보시의 보상)>
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# 04 발명자란?

**개발 착수를 지시한 생산팀장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나요?**

**NO!**

통상적인 수준의 관리 감독업무를 한 사실만 인정됩니다.

<서울고등법원 2006.06.22. 선고, 2006나 62159>

**특허출원 중 청구항 수정, 일부도면을 수정해도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나요?**

**NO!**

특허 기재를 명확화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.

<서울남부지방법원 2005.10.7. 선고, 2004 가합 10788>

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
**기술적 수단을 착상**하고
이를 **반복 실현하는 방법을 만든 자**

**발명자**

① 단순히 기술의 착상에만 그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자

②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한 조언자, 단순한 보조자, 자금제공자, 도급인이나 명령자

<수원지방법원 2008. 10. 17. 선고, 2007가합 14622>

04

#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사례(실시보상)

## 사례 1 ) 휴대전화기 관련

**발명의 내용**

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

**매출액**

136,569,871,101,526원

**보상금 액수**

21,851,179원

**매출액 X 직무발명의 기여도 X**
136,569,871,101,526원 2%

**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X 발명자 공헌도**
2% 0.2% 20%

< 서울고등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나2016228 판결 >

**실시보상금 산정 방식**(판례 기준)

사용자가 얻을 이익

04

#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사례(처분보상)

## 사례 2 ) HDTV 신호처리 관련

**발명의 내용**
HDTV 신호처리에 관한 발명

**실시료 수입액**
62,566,867,721원

**보상금 액수**
6,036,686,772원

**실시료 수입액 X 발명자 기여도 10% - 지급받은 보상금**
= 62,566,867,721원 x 0.1 - 220,000,000원
= 6,036,686,772원 (최종 직무발명 보상금액)

<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23. 선고 2010가합41527판결 >

### 처분보상금 산정 방식(판계 기준)

04

# 직무발명제도 실시보상 주요 판례

| 발명 명칭 및 분야 | 선고 결과 | 계산방식 |
| --- | --- | --- |
| **화학제품**<br>매출액 : 189억원 | **청구액 : 2억원**<br>인용액 : 0.07억원 | 매출액(189억원) × 직무발명의 기여도 100% × 실시료율 3.5% × 독점권기여율 5% × 발명자공헌도 50% × 발명자기여도 50%<br><대전지방 2014 가합> |
| **동합금**<br>매출액 : 6조 893억원 | **청구액 : 0.5억원**<br>인용액 : 0.34억원 | 매출액(6조893억원) × 직무발명의 기여도 100% × 실시료율 2% × 독점권기여율 5% × 발명자공헌도 10% × 발명자기여도 50%<br><대전지방 2012 가합 37415 > |
| **리튬이온폴리머**<br>매출액 : 5,185억원 | **청구액 : 1억원**<br>인용액 0.84억원 | 매출액(5,185억원) × 실시료율 0.9% × 독점권기여율 60% × 발명자공헌도 10% × 발명자기여도 30%<br><수원지방 2009 가합 2746 > |
| **족구화**<br>매출액 : 101억원 | **청구액 : 1억원**<br>인용액 : 0.16억원 | 매출액(101억원) × 직무발명의 기여도 100% × 실시료율 5.4% × 독점권기여율 10% × 발명자공헌도 30% × 발명자기여도 100%<br><의정부 2014 가 10563 > |

04

# 직무발명제도 보상금의 세제 혜택

## 법인세 감면 혜택

중소기업의 경우, 100분의 25

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(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)
*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(연구·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)

## 비과세 혜택

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

* 소득세법 제12조 (비과세소득)
* 소득세법 제20조 (근로소득)
*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(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)
* 소득세법 제21조 (기타소득)

05

#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

06

#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

##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?

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·중견기업을 "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"으로 인증하고,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

### 신청자격

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, 최근 2년 이내에 제도 운영 실적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

### 평가기준

직무발명보상규정(30점), 보상실적(40점), 운영의 합리성(30점)

### 인증기준

심의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

### 인센티브

**①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**

**②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**

- 특허청 : 민간 IP-R&D 연계전략 지원 사업,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등
- 중소벤처기업부 :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,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,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등

③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의 4~6년차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(2021.2까지)

### 접수기간

분기별 1회

### 신청방법

**온라인신청 /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: ip-job.org**
**문의전화 ) 02-3459-2844 / 문의 메일 ) 2845@kipa.org**

KIPA 한국발명진흥회

06

# 직무발명보상 컨설팅 프로그램 /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

## 컨설팅 프로그램이란?

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원하는 시간, 원하는 장소에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 신청기간

2020년 2월 ~ 11월까지

### 신청방법

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(한국발명진흥회 kipa.org)

### 신청문의

**발명진흥실**
**전화 ) 02-3459-2844**
**메일 ) 2845@kipa.org**
**페이지) ip-job.org**

## 직무발명제도 설명회란?

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심 있는 CEO 모임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의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입니다.

### 대상

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, 기관 및 협회 (경제인, 지재권 등) 등 기업 CEO 모임, 특허관리 부서원 및 기타 임직원

### 기간

연중

### 내용

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, 정부지원사업 소개, 세제혜택 등

### 신청문의

**발명진흥실**
**문의 전화 ) 02-3459-2844**
**문의 메일 ) 2845@kipa.org**
**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) ip-job.org**

직무발명제도

# 직무발명제도

문의 전화 | 02-3459-2844
문의 메일 | 2845@kipa.org
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| ip-job.org

감사합니다.

KIPA
한국발명진흥회